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ISBN 978-89-6921-350-1 (93330)

자료 19-03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자료 19-03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Barrier Free Certification Guidelines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자료 19-03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Barrier Free Certification Guidelines

본 상세표준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 인증지표를 실무에서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작됨. 또한, 항목별 규정 적용에 대한 예시는 가능한 누구나 사용가능한 환경인 Universal Design 측면의 설계방안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BF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목차 CONTENTS

PART 1 개요

1. 상세표준도의 구성 10
2. Barrier Free 대상시설의 용도 12
3. 용어의 정의 16
4. Barrier Free인증제도의 절차 25
5. 인증 수수료 29
6. 인증 등급 및 인증 유효기간 등 30
7. Barrier Free 건축물 인증평가 항목 32

PART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44
	1.1.2 유효폭	48
	1.1.3 단차	52
	1.1.4 기울기	58
	1.1.5 바닥 마감	62
	1.1.6 보행장애물	64
	1.1.7 덮개	72
1.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74
	1.2.2 주차면수확보	78
	1.2.3 주차구역크기	80
	1.2.4 보행안전통로	82
	1.2.5 안내 및 유도표시	86
1.3 출입구(문)	1.3.1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90
	1.3.2 출입문의 형태	96
	1.3.3 유효폭	100
	1.3.4 단차	102
	1.3.5 전면 유효거리	104
	1.3.6 손잡이	106
	1.3.7 경고블록	110

2. 내부시설

2.1 일반출입문	2.1.1 단차	116
	2.1.2 유효폭	118
	2.1.3 전면 유효거리	124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26
2.2 복도	2.2.1 유효폭	134
	2.2.2 단차	138
	2.2.3 바닥 마감	142
	2.2.4 보행장애물	144
	2.2.5 연속손잡이	152
2.3 계단	2.3.1 형태 및 유효폭	158
	2.3.2 챌면 및 디딤판	164
	2.3.3 바닥 마감	168
	2.3.4 손잡이	170
	2.3.5 점형블록	176
2.4 경사로	2.4.1 유효폭	178
	2.4.2 기울기	180
	2.4.3 바닥 마감	182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184
	2.4.5 손잡이	188
2.5 승강기	2.5.1 전면활동공간	192
	2.5.2 통과 유효폭	194
	2.5.3 유효 바닥면적	196
	2.5.4 이용자 조작설비	198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206
	2.5.6 수평손잡이	210
	2.5.7 점자블록	212

3. 위생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216
	3.1.2 안내표지판	220
3.2 화장실의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226
	3.2.2 바닥 마감	232
	3.2.3 출입구(문)	234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238

	3.3.2 활동공간	244
	3.3.3 형태	246
	3.3.4 손잡이	248
	3.3.5 기타설비	252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256
3.5 세면대	3.5.1 형태	260
	3.5.2 거울	264
	3.5.3 수도꼭지	268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270
	3.6.2 기타설비	274
3.7 샤워실 및 탈의실	3.7.1 구조 및 마감	276
	3.7.2 기타설비	278

4. 안내시설	**4.1 안내설비**	4.1.1 안내판 284
		4.1.2 점자블록 290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294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302
	4.2 경보 및 피난설비	4.2.1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304

5. 기타시설	**5.1 객실 및 침실**	5.1.1 설치율 310
		5.1.2 설치위치 312
		5.1.3 통과유효폭 314
		5.1.4 활동공간 316
		5.1.5 침대구조 318
		5.1.6 객실바닥 322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324
		5.1.8 유효 바닥면적(화장실) 326
		5.1.9 손잡이(화장실) 328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332
		5.1.11 설치높이(기타설비) 334
		5.1.12 초인등(기타설비) 336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1 설치율 338
		5.2.2 설치위치 342
		5.2.3 관람석의 구조 348
		5.2.4 열람석의 구조 354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5.3.1 설치위치 358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360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364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366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370
	5.5 피난구 설치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372
		5.5.2 피난의 구조 378
	5.6 임산부 휴게시설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382
		5.6.2 내부 구조 386

6. 기타설비	**6.1 비치용품**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394

7. 종합평가 402

PART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항목별 다양한 설치방법

1. 매개시설 406
2. 내부시설 438
3. 위생시설 458
4. 안내시설 464
5. 기타시설 467

PART 4 부록

1. 관련법령 47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건축물 우수 국내사례 500

PART I

개 요

01 상세표준도의 구성 10
02 Barrier Free 대상 시설의 용도 12
03 용어의 정의 16
04 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절차 25
05 인증 수수료 29
06 인증 등급 및 인증 유효기간 등 30
07 Barrier Free 건축물 인증평가 항목 32

01
상세표준도의 구성

1. 평가범주
2. 평가항목
3. 세부평가기준
4. 산출기준과 평가점수
5. 산출기준 기본사항
6. 관련법규
7. 평가등급
8. 산출기준 참고이미지
9. 산출기준 해설
10. 용어정의
11. 페이지번호(좌측페이지/우측페이지)

1 2.2 복도

2 ## 2.2.1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3

평가목적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4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3.0
우 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2.4

-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5 ### 산출기준 기본사항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 우 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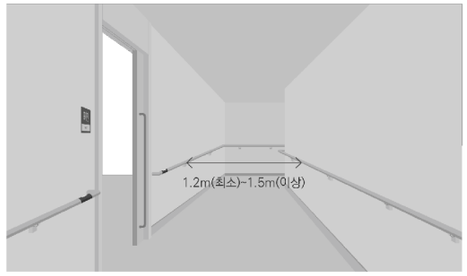

9 · 모든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10 복도 유효폭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하며,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을 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11

02
Barrier Free 대상시설의 용도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2015. 1. 28 개정)제10조의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7. 24 본조신설)제5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5. 1. 28 개정)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15. 8. 3 개정)[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2015. 8. 3 개정)

인증 대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ef.or.kr

인증 의무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제5조의2 관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음료 · 차(茶) · 음식 · 빵 · 떡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안마시술소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 · 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塗裝)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 · 교도소 · 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 보육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부 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1)]

※ 기부 채납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대상 시설임

기부 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적 의무 주체는 기부 채납자가 아닌,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신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편익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는 없음

자치법규(21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12.31

충남
충청남도
2015.12.30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9.6.21

광주
광주광역시
2014.1.1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6.1
동구
2018.10.5

전남
전라남도
2013.6.13
목포시
2013.6.19
완도군
2019.7.12

경기
경기도
2015.11.4
경기도교육청
2015.11.4

대구
대구광역시
2015.10.30
달서구
2014.4.11
북구
2016.6.10

울산
울산광역시
2019.11.7

부산
부산광역시
2015.10.24

경남
경상남도
2019.8.1
경상남도 교육청
2019.8.1
거창군
2016.9.2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19.3.1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6.4.8

1) 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3612, 법령 일부 발췌
2) 법제처, 2019. 11. 29. 기준

03
용어의 정의

이 상세표준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접근로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모든 범위를 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호가목(1)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으로 장애인등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든 노상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경사로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시설물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 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A의 형식으로 말하며, 1의 높이를 해소하기 위해 A의 거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1/12의 경사로는 100mm의 높이를 해소하는데 1,200mm의 거리로부터 경사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9. 3. 20.) 일부 발췌

턱 낮추기

1.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이동편의시설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2019. 2. 8.) 일부 발췌

2.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9. 3. 20.) 일부 발췌

전·후면 유효거리

출입구(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가목(1)

일반출입구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건축물) 2.1.3 전·후면 유효거리 산출기준

기울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발췌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3. **경사로**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형태

버튼형 자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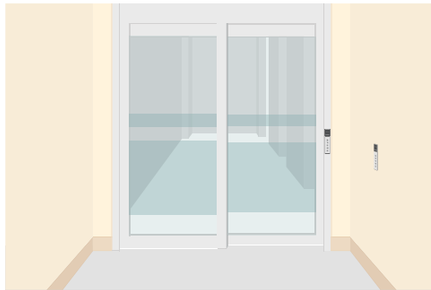

센서형 자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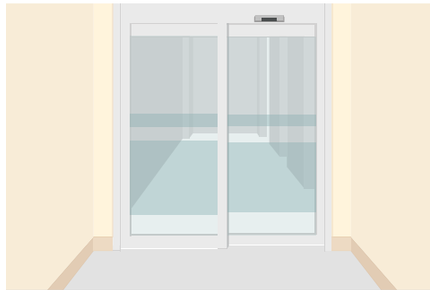

쌍여닫이문 / 양여닫이문

외여닫이문

미서기문

미닫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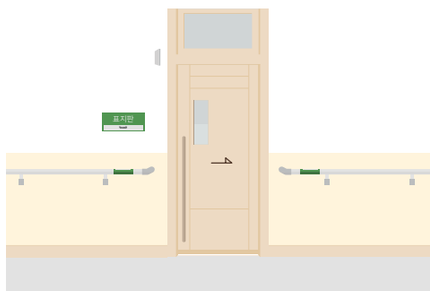

활동공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발췌

①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 확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 확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③ 경사로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 확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④ 대변기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 확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⑦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⑧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유효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발췌

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 확보한 폭을 말한다.

④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용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 확보한 폭을 말한다.

⑥ 경사로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 확보한 폭을 말한다.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 확보한 폭을 말한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필요공간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1 시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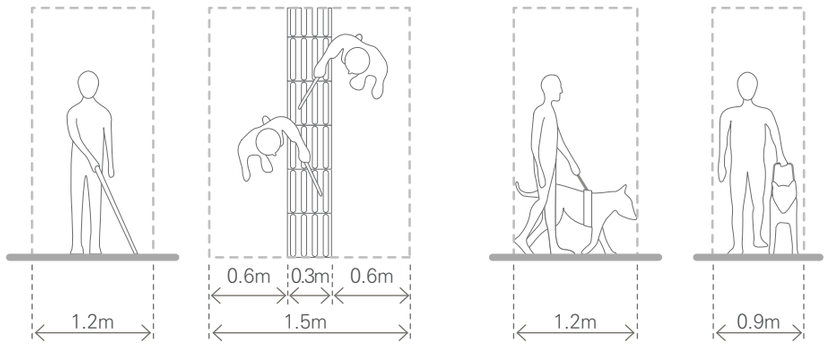

흰지팡이 사용자　　안내견 동반자

2 목발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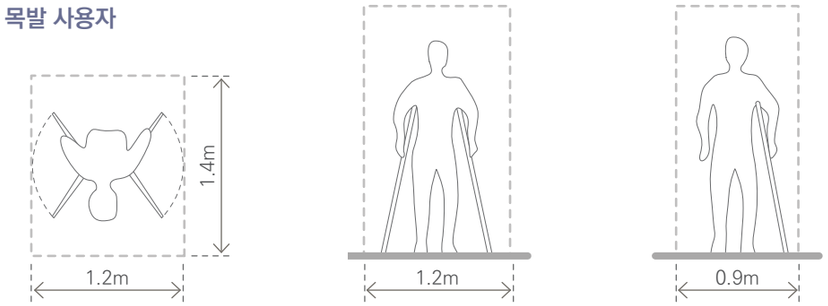

3 유모차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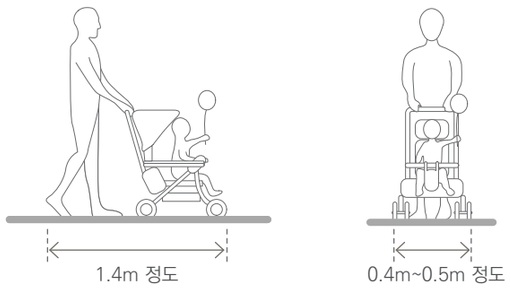

4 도달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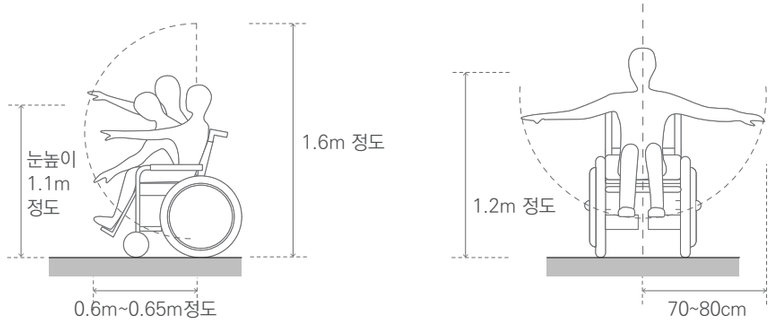

청각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1 정보(안내)

다중이용시설(예, 대중교통시설)의 중요한 음성정보는 문자정보를 병행해야 한다.

2 표시

이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은 청각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표시로 사용된다. “난청” 표시는 본인이 난청인 임을 증명하는 표시, 난청인들이 사용 가능한 전화, 팩스 등 음향기기 등에 주로 사용되며 국내법상 표시의무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표시이다. “집단보청장치” 표시는 난청인을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한 지역을 의미하는 표시로 국내법상 표시 의무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감치수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016. 12. 31. ISBN 978-89-6921-3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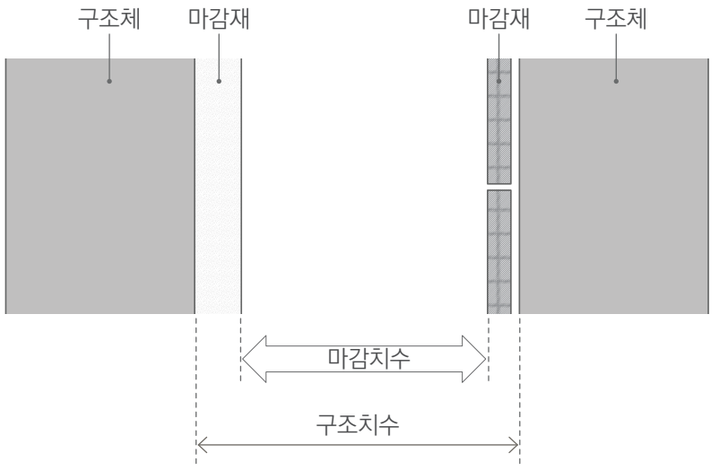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국가기술표준 KS B 6895 승강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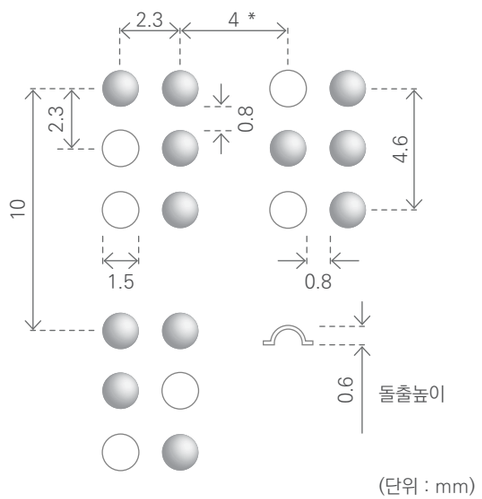

* 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등과 같이 표기내용이 많을 경우 최소 3mm까지 조정가능

04
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절차

인증의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 군 · 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인증 신청시기

1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2 본인증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인증 절차도

1 예비인증

※ 사전검토는 인증기관별 업무처리 규칙을 참조

2 본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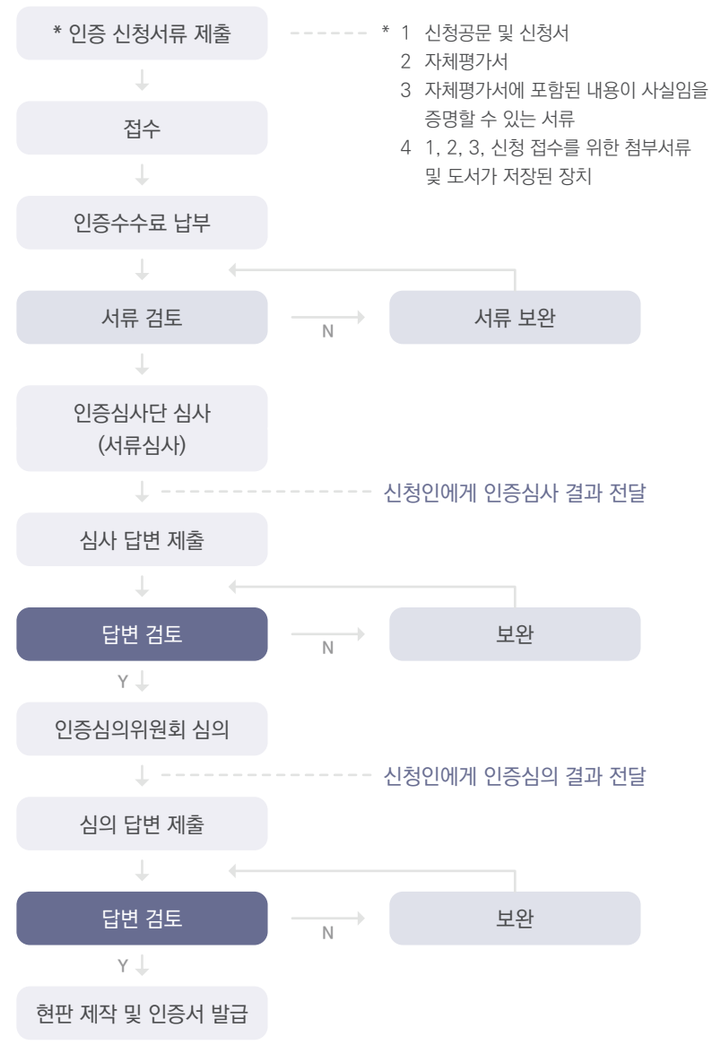

※ 사전검토는 인증기관별 업무처리 규칙을 참조

인증 신청 관련 첨부서류

① 신청공문

② 인증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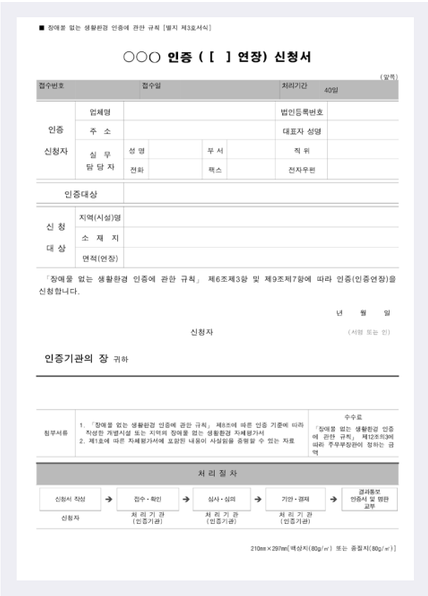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인증 ([ ]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인증 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		팩스	전자우편	
인증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7항에 따라 인증(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심사 · 심의	→	기안 · 결재	→	결과통보 인증서 및 명판 교부
신청자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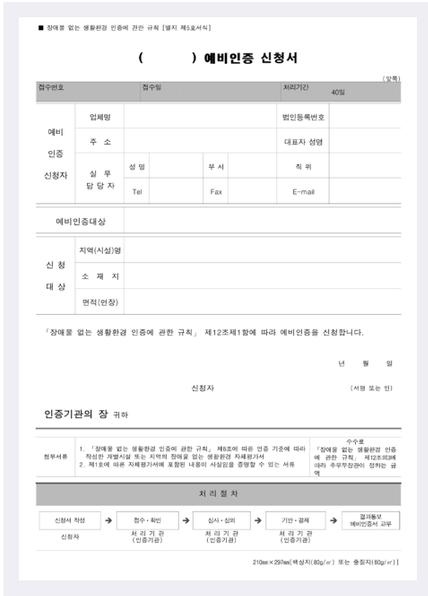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예비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예비 인증 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예비인증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심사 · 심의	→	기안 · 결재	→	결과통보 예비인증서 교부
신청자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인증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③ 자체평가서

④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①, ②, ③, ④ 신청 접수를 위한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

※ 그 외 기타서류 등은 인증기관별 업무처리 규칙을 참조

05
인증 수수료 [시행 2015.8.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1호, 2015.8.3, 제정]

공통사항
* 제4조제2항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세 별도

개별시설 인증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단위 : 원]

면적구간 (연면적)		예비인증 수수료	본인증 수수료	인증 연장 수수료
제 1구간	300㎡미만	1,030,000	2,015,000	1,007,500
제 2구간	300㎡이상 - 1,000㎡ 미만	1,648,000	3,224,000	1,612,000
제 3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2,060,000	4,030,000	2,015,000
제 4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2,472,000	4,836,000	2,418,000
제 5구간	10,000㎡이상	3,090,000	6,045,000	3,022,500

* 예비인증은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수수료에 75만원 추가
* 제4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단위 : 원]

면적구간 (연면적)	예비인증 수수료	본인증 수수료	인증 연장 수수료
-	2,060,000	4,030,000	2,015,000

* 예비인증은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수수료에 80만원 추가

지역 인증

[단위 : 원]

면적구간 (연면적)	예비인증 수수료	본인증 수수료	인증 연장 수수료
10만㎡이상 - 200만㎡미만	3,090,000	6,180,000	3,090,000
200만㎡이상 - 300만㎡미만	3,090,000	8,070,000	4,035,000
300만㎡이상	3,090,000	9,959,000	4,979,500

* 예비인증은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수수료에 120만원 추가

06
인증 등급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2]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등 급	등급 기준
최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 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 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관련 안내

1 인증 유효기간

본인증 5년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5항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2 인증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7항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현판 및 인증서

1 인증현판시안 (동판)

orange 기쁨, 즐거움, 사교적인, 미래지향인

green 건강, 안전, 자연, 평화, 신뢰, 정직

환경의 장애물(Barrier)에서 벗어나
사회약자의 자유(Free)의지가 펼쳐지는 공간 상징

2 예비인증서 / 본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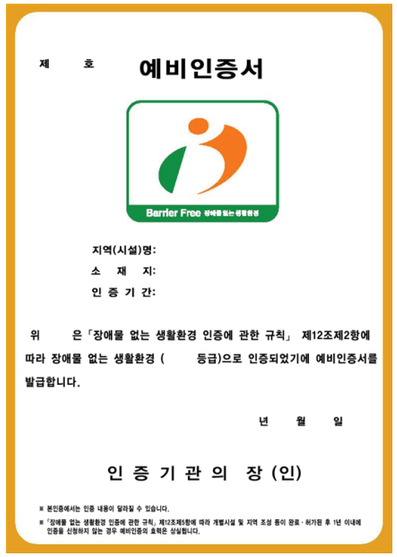

제 호 **예비인증서**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지역(시설)명:
소 재 지:
인 증 기 간:

위 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의 장 (인)

※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 ·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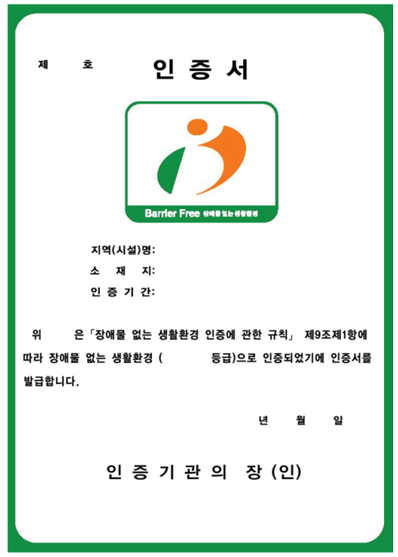

제 호 **인 증 서**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지역(시설)명:
소 재 지:
인 증 기 간:

위 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의 장 (인)

07

Barrier Free 건축물 인증평가 항목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1. 매개시설

1.1 접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6	44
1.1.2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3	48
1.1.3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3	52
1.1.4 기울기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3	58
1.1.5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3	62
1.1.6 보행장애물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2	64
1.1.7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2	72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6	74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4	78
1.2.3 주차구역 크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4	80
1.2.4 보행안전 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4	82
1.2.5 안내 및 유도 표시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3	86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1.3.1 출입구(문) 의 높이차이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6	90
1.3.2 출입문의 형태	해당시설의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3	96
1.3.3 유효폭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3	100
1.3.4 단차	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3	102
1.3.5 전면 유효거리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2	104
1.3.6 손잡이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2	106
1.3.7 경고블록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2	110

2. 내부시설

2.1 일반출입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2.1.1 단차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3	116
2.1.2 유효폭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3	118
2.1.3 전·후면 유효거리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3	124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3	126

2.2 복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3	134
2.2.2 단차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3	138
2.2.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2	142
2.2.4 보행장애물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2	144
2.2.5 연속손잡이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2	152

2.3 계단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2.3.1 형태 및 유효폭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 평가	3	158
2.3.2 챌면 및 디딤판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 정도 평가	3	164
2.3.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 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2	168
2.3.4 손잡이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2	170
2.3.5 점형블록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2	176

2.4 경사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2.4.1 유효폭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3	178
2.4.2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3	180
2.4.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2	182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2	184
2.4.5 손잡이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2	188

* 파출소, 지구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2층으로된 건축물로서 1층만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승강기 및 경사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5 승강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2.5.1 전면활동 공간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 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2	192
2.5.2 통과 유효폭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2	194
2.5.3 유효 바닥면적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2	196
2.5.4 이용자조작설비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3	198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2	206
2.5.6 수평손잡이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2	210
2.5.7 점자블록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2	212

* 파출소, 지구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2층으로된 건축물로서 1층만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승강기 및 경사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위생시설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10	216
3.1.2 안내표지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5	220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3.2.1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6	226
3.2.2 바닥 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4	232
3.2.3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평가	3	234

3.3 대변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3.3.1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5	238
3.3.2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3	244
3.3.3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3	246
3.3.4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3	248
3.3.5 기타설비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3	252

3.4 소변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6	256

3.5 세면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3.5.1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3	260
3.5.2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3	264
3.5.3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3	268

3.6 욕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3.6.1 구조 및 마감	욕실의 구조와 마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3	270
3.6.2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3	274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3.7.1 구조 및 마감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3	276
3.7.2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3	278

4. 안내시설

4.1 안내설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4.1.1 안내판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4	284
4.1.2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3	290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3	294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3	302

4.2 경보 및 피난 설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4.2.1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3	304

5. 기타시설

5.1 객실 및 침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5.1.1 설치율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5	310
5.1.2 설치위치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5	312
5.1.3 통과유효폭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3	314
5.1.4 활동공간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3	316
5.1.5 침대구조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2	318
5.1.6 객실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2	322
5.1.7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3	324
5.1.8 유효 바닥면적 (화장실)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3	326
5.1.9 손잡이(화장실)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2	328
5.1.10 점자표지판 (기타설비)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3	332
5.1.11 설치높이 (기타설비)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2	334
5.1.12 초인등 (기타설비)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2	336

5.2 관람석 및 열람석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5.2.1 설치율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 정도 평가	4	338
5.2.2 설치위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3	342
5.2.3 관람석의 구조	관람석의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4	348
5.2.4 열람석의 구조	열람석의 구조 평가	2	354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5.3.1 설치위치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2	358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3	360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364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366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370

5.5 피난구 설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3	372
5.5.2 피난의 구조	피난구의 구조 평가	3	378

5.6 임산부 휴게시설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2	382
5.6.2 내부 구조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3	386

6. 기타설비

6.1 비치용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3	394

7. 종합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쪽수
-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	402

총 지표수	94	총 배점	288